

러시아 5월 수출현안 · 수입제도 모니터링

I

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및 동향

1. (기술규정) 포장식수의 안전성에 대한 기술규정 준수 평가 요건 확정

- 출처: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N 75 (2018.05.10.), 국가표준 GOST R 54316-2011, 러시아 품질평가기관 (<https://roskachestvo.gov.ru/>)

- 천연 광천수를 포함한 포장식수의 안전성에 대한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기술규정 준수 평가 요건이 확정됨
 - 본 결정으로 준수 여부를 증명할 서류 목록이 규정됨
 - 포장식수의 종류별 의무 제출 서류 요건은 다음과 같음

품명	품목번호	제출 서류	기타
일반용 천연 광천수	2201 10	자기 적합성 선언서	
의학용 - 일반용 천연 광천수	2201 10	정부 등록증 또는 정부 등록자 통합 목록에 등록된 정보 제시(특수식품 통합목록 내 정보 입증)	충분, 자기 적합성 선언서 불필요
의학용 천연 광천수	2201 10	정부 등록증 또는 정부 등록자 통합 목록에 등록된 정보 제시(특수식품 통합목록 내 정보 입증)	충분, 자기 적합성 선언서 불필요
혼합 식수	2201 90 000 0	자기 적합성 선언서	
가공 식수	2201 90 000 0	자기 적합성 선언서	
천연 식수	2201 90 000 0	자기 적합성 선언서	
유아용 식수	2201 90 000 0	정부 등록증 또는 정부 등록자 통합 목록에 등록된 정보 제시(특수식품 통합목록 내 정보 입증)	충분, 자기 적합성 선언서 불필요
인공 광천수	2201 10 900 0	자기 적합성 선언서	

* 유라시아 경제연합 통합정보시스템 내 특수식품 통합목록관련 부분의 시행일부터 적용

- 음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천연 광천수나 긴급시 중앙·비중앙 상수도를 통해 제공되는 식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
- 광천수 구분은 다음 기준에 따름

미네랄에 따른 구분	기준치	명칭 구분
담수	1 g/dm ³ 이하	일반용, 생물학적 활성성분 함유시 의학용-일반용 혹은 의학용으로 인정
극소 미네랄	1 - 2 g/dm ³ 이하	의학용-일반용, 생물학적 활성성분 함유시 의학용으로 인정
저 미네랄	2 - 5 g/dm ³ 이하	
중 미네랄	5 - 10 g/dm ³ 이하	
고 미네랄	10 - 15 g/dm ³ 이하	의학용

- 향후 식수 관련 기술규정은 계속 추가 및 강화될 것으로 보임
 - 기술규정 개발에 참여한 ‘음료 및 생수 생산자 연합’ 회장 드미트리 페트로프에 따르면, 관세동맹 형성 이전에 러시아의 식수 관련 기술규정 부재로 광천수 생산자들의 불법행위(수원지 조작, 라벨링 위조)가 빈번했음
 - 식수 기술규정의 채택 이전에는 유통 식수의 약 30%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, 현재는 약 15-20%로 감소됨
 - 러시아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의 모니터링을 통해 90일간의 영업정지와 최대 100만 루블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관리 시스템을 형성 중임
 - 품질평가기관에서는 시판 생수를 대상으로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를 검사한 후 결과를 사이트에 게재 중
 - 중금속, 기생충 유무, 방사선, 유기 화합물 및 살충제 유무, 미생물 지수 등 50개 이상의 지표를 검사함

- 러시아 1인당 식수소비량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, 시장은 점진적으로 팽창하는 추세임
 -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을 제외하고는 러시아 식수시장은 계속 성장해옴
 - 2016년 1인당 식수소비량은 40.3L, 100L이상 소비하는 선진국에 비하면 미미함
 - 위생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소비자 구매력 상승으로 수돗물 음용자 수가 감소 중
 - 또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넓은 수도관 때문에 수질이 매우 좋지 않음
 - 최근 한국 내 음료기업들의 해외 식수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중국, 동남아와 함께 러시아 시장도 떠오르고 있음
 - 향후 기술규정을 준수하고 미네랄 함량에 따른 물의 맛과 향의 차별화를 통해 관능적, 기능적으로 우수한 제품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해 볼 수 있음

-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발효됨
 - 천연 광천수를 포함한 식수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은 2019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

2. (기술규정) 식품 라벨링에 대한 기술규정(TP TC 022/2011) 개정

- 출처: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N 72 (2018.05.10.), 위생역학 규격 제도 M P 2.3.0122-18

- 식품 라벨링에 대한 기술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8개월 과도기 조항이 시행됨
 - 18개월의 과도기 동안 생산 및 출시 시에 유전자 재조합 제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함
 - 그러나 “GMO“라는 특수기호는 아직 필수사항은 아님
 - 개정된 기술규정에 따르면 GMO표시는 EAC 표시(통합인증위원회)와 동일한 크기로 EAC표시 옆에 표기해야함
 - 2017.12.20. N90에 따르면 GMO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0.9%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 GMO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
 -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5가지 종류의 농작물(감자, 옥수수, 대두, 사탕무, 쌀)로 구성된 17가지 유형의 GMO 식품 사용을 허가함
 - 이는 개별구성요소의 형태로 많은 수의 제품에 첨가할 수 있어 제품의 30-40%를 GMO 성분으로 구성할 수도 있음
- 식품 라벨링에 대한 기술규정으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인식의 용이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됨
 - 러시아에는 2004년까지 GMO를 모니터링 할 기관이 없었음
 - GMO표시는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할 당시 GMO 함유여부 판단의 유일한 수단이므로 라벨링을 단순화하여 인식률을 높여야함
 - 또한 라벨링 표시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의 지속적인 관리·감독이 요구됨
- 러시아는 신호등 색깔(빨강, 노랑, 초록)을 이용한 ‘신호등 정책’ 시행으로 식품 성분 표시의 가독성을 높여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하고 있음
 - 설탕, 소금 및 지방 함량이 높은 제품은 빨간색으로 표시
 - 함량이 중간 수준이거나 낮은 수준의 제품은 각각 노란색과 녹색으로 표기
 - 러시아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은 신호등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함
 - GMO 표시 의무화와 신호등 정책은 식품 가격상승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
- 러시아 가공식품 시장은 친환경적이고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제품 전략을 바탕으로 공략해야 할 것으로 보임
 - 식품 라벨링 기술규정의 변화는 러시아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됨

- 향후 러시아 식품시장의 화두를 추적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될 식품 성분 정보 표시 규정 변경사항을 주시하며 전략을 발전시켜야 함

○ 본 결정은 공포일 30일 이후부터 효력을 받함

3. (수출현안) 일부 수산물의 부가가치세율 18%에서 10%로 인하

- 출처: 러시아 연방 정부 행정명령 N552 (2018.05.05.), 러시아 수산물 생산·무역 협회 (<http://fish-alliance.ru>)

- 러시아 연방으로 수입되는 “식품 및 유아용품 중 부가가치세율 10% 부과 제품 목록”에 대한 러시아 연방 정부 행정명령 N908 (2004.12.31.)을 개정함
 - 다음 품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율 기존 18%에서 10%로 인하 조치가 내려짐

OK 034-2014 코드* 제품	
03.11.63.120	갈조류
03.21.43.000	양식 해조류
03.21.44	양식 생물, 신선 또는 냉장 연체동물 및 수생 무척추 동물
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 상품코드 제품	
1212 21 000 0	식용으로 적합한 해조류와 기타 조류

* 경제활동 유형에 따른 러시아 연방 분류 코드

- 해당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는 작년부터 계속되어온 러시아 농업부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짐
- 러시아의 부가가치세율은 면제, 10%, 18 % 세 가지로 분류됨
 - 석유, 천연가스, 우주, 조선 관련 산업 제품, 일부 의료용품 등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줌
 - 일반적으로 18%의 세율이 적용되나, 식품, 유아용품, 의료용품, 정기간행물을 비롯한 일부 인쇄물의 경우 특별히 10%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함
- 부가가치세 인하에 따른 가격 인하로 연체동물과 해조류 수요의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됨
 - 러시아 대형 슈퍼마켓 체인 《perekryostok》이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부가가치세 감소는 생산자의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어 가격 감소로 이어지고, 가격감소는 수요와 생산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함
 - ‘러시아 수산물 생산·무역 협회’에 따르면,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는 적은 편인데 높은 가격이 주요 원인으로 꼽혀옴
 - 러시아에서는 해마다 약 10,000-15,000톤의 연체동물이 생산됨

- 작년 한해 러시아의 해조류 시장은 8000톤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으나 실제 한해 생산능력은 20만 톤에 달함
 - 2017년 기준 초절임 미역(해조류)은 kg당 200루블(한화 3,500원), 굴은 kg당 800루블(한화 14,000원), 홍합은 kg당 650루블(한화 12,000원)
- 가격인하에 따른 수요 증가는 한국 기업의 진출 혹은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음
 - 해조류 가공 기술 및 노하우를 가진 한국 기업은 강점을 가짐
 - 현재 가장 수요가 많은 해산물은 건조 해조류와 동결건조 해조류로 러시아 제품이 저렴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산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음
 - 러시아 업체는 해외 업체와 같은 가공방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구식 방식을 사용하여 기술력이 떨어짐
 - 또한 요오드가 풍부한 해산물 섭취를 장려하는 러시아 내 분위기는 해조류 시장 확대를 가속화 시켜줄 것으로 예측됨
- 본 결정은 2018년 5월 15일부터 효력을 발함

II

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/ 주의사항

1. (통관) 수산물 수입허가 한국기업명단 변경사항

- 출처: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공문 N Φ C-H B-7/12457 (2018.05.24.)

- 러시아 동식물검역국은 공문을 통해 수산물 수입을 허가받은 기업명단에 신규 3개사를 추가함
 - 수산물의 경우 완제품, 통조림, 생물생선, 냉동, 냉장, 반제품, 연체동물, 수생 무척추 동물 등 16개로 구분된 항목별로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음
 - 기업은 취급 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해 러시아로 수출이 허용됨
 - 신규 추가 기업은 다음과 같음 (3개사)

번호	상호	취급 허가 품목
KRF-0060	BADAONE CO., LTD.	건조, 말린, 염장 또는 염수장한 생선, 냉훈 또는 온훈 생선
KRF-0061	Dongwon Loex Co., Ltd.	신선, 냉장 생선; 냉동생선; 어육, 신선·냉장·냉동 (다진 어육 포함) 생선필레; 건조, 말린, 염장이나 염수장한 생선, 냉훈 또는 온훈 생선; 생물·신선·냉장·냉동·삶고 냉동·건조·염장 또는 염수장한 갑각류 (껍데기 유무 상관없음); 연체동물 (껍데기 유무 상관없음), 기타 생물·신선·냉장·냉동·건조·염장 또는 염수장한 수생 무척추동물; 어류 반제품; 어류, 갑각류,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냉동(냉장) 제품 보관
KRF-0062	ASIA COLD STORAGE CO., LTD SECOND FACTORY	어류, 갑각류,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냉동(냉장) 제품의 저장

- 기존 1개 기업에 대해 2018년 5월 24일부로 유라시아 경제연합으로의 수산물 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함
 - 일시적인 수입 허가 제한이란 제한의 해제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수입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함
 - 건조된 명태에서 유해물질이 확인되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일시적인 제한조치가 내려짐. 시험 결과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이 증명되면 다시 수입이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짐
 - 수입허가 일시적 제한 기업 (1개사)

번호	상호	취급 허가 품목
KRF-0041	CHEONG A GOOD FOOD CO.	냉동 생선; 어육, 신선·냉장·냉동 (다진 어육 포함) 생선필레; 건조, 말린, 염장 또는 염수장한 생선, 냉훈 또는 온훈 생선; 연체동물 (껍데기 유무 상관없음), 기타 생물·신선·냉장·냉동·건조·염장 또는 염수장한 수생 무척추동물; 냉장·냉동 생선부산물; 철갑상어류, 연어류를 제외한 생선의 알; 어류, 갑각류,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냉동(냉장) 제품 보관

2. HS code, 관세

- 없음

3. 기타 주의사항 및 관련 청 요구사항

- 없음

III 통관문제 사례·관련(대응방안, 사유분석, 경쟁국산 등)

발생일자	통관번호	HS code	상품명(제조사)	중량(kg)	불합격사유	조치사항
2017.1.1						

※ 첨부파일 참조